|  |  |  |
| --- | --- | --- |
| **광고발표등기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9호  <광고발표등기 관리규정>이 중화인민광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희외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6년 11월 1일  제1조 광고발표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발표 등기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광고발표 업무를 취급하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이하 '광고발표업체'로 통칭)는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의 광고발표등기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발표등기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자격이 없는 신문•잡지 출판업체의 경우 법인 자격을 보유한 주최업체가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한다.  (2) 광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광고 전문 인력과 광고 법률•법규를 숙지한 광고 심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광고발표 업무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발표등기 신청표>;  (2) 관련 매체의 비준문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라디오•TV 방송기구 허가증> 및 <라디오•TV 채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문 출판업체는 <신문 출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잡지 출판업체는 <잡지 출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 자격 증명서류;  (4) 광고업무 수행기구의 증명서류 및 그 책임자의 임명서류;  (5) 광고 전문 인력 및 광고 심사 인력의 증명서류;  (6) 장소 사용 증명서류.  광고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등기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등기를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라디오방송 주파수, TV 채널, 신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간은 광고발표업체가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준문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발표등기의 등기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광고발표업체는 해당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광고발표등기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광고발표 변경등기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변경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광고발표업체는 지체없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관이 만료되었고 광고발표업체가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광고발표업체의 법인 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광고발표등기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무효화된 경우;  (4) 광고발표업체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광고발표업체가 더 이상 이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5) 광고발표업체가 광고발표 사업을 종료한 경우;  (6) 법에 따를 때 광고발표등기를 응당히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0조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광고발표업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발표 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을 허가하는 경우 갱신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갱신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갱신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업무의 수주등기, 심사, 기록 관리, 통계보고표 등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업 통계보고표 제도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광고업 통계 시스템상으로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직전연도의 광고 경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취검사 등 방식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발표업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어야 한다. 발취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광고발표등기의 등기사항에 따라 광고발표 활동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2) 광고 전문 인력과 광고 심사 인력의 상황;  (3) 광고업무 수주등기, 심사, 기록 관리, 통계보고표 등 기본관리제도의 수립 및 집행 상황;  (4) 규정에 따라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 여부;  (5) 발취검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14조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발표업체의 광고발표등기 무효화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광고발표업체를 위하여 광고발표등기를 진행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가 광고발표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광고발표 업무를 무단 취급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광고발표등기 허가를 취득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등기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광고발표등기의 등기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후 광고발표업체가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변경을 명하며;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광고발표업체가 규정에 따라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부서의 포탈사이트 또는 정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광고발표등기 허가 정보, 변경등기 허가 정보, 말소등기 허가 정보 등 광고발표등기 정보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상기 경로를 통한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문 등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기업의 광고발표등기 정보와 행정처벌 정보는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1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표한 <광고경영 허가증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广告发布登记管理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9号  《广告发布登记管理规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12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6年11月1日  　　第一条 为加强对广告发布活动的监督管理,规范广告发布登记，根据《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以下简称广告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以下统称广告发布单位）从事广告发布业务的，应当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办理广告发布登记。  　　第三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主管全国广告发布登记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辖区内的广告发布登记和相关监督管理工作。  　　第四条 办理广告发布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法人资格；不具有法人资格的报刊出版单位，由其具有法人资格的主办单位申请办理广告发布登记；  　　（二）设有专门从事广告业务的机构；  　　（三）配有广告从业人员和熟悉广告法律法规的广告审查人员；  　　（四）具有与广告发布相适应的场所、设备。  　　第五条 申请办理广告发布登记,应当向工商行政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广告发布登记申请表》；  　　（二）相关媒体批准文件：广播电台、电视台应当提交《广播电视播出机构许可证》和《广播电视频道许可证》，报纸出版单位应当提交《报纸出版许可证》，期刊出版单位应当提交《期刊出版许可证》；  　　（三）法人资格证明文件；  　　（四）广告业务机构证明文件及其负责人任命文件；  　　（五）广告从业人员和广告审查人员证明文件；  　　（六）场所使用证明。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应当将准予登记决定向社会公布；不予登记的，书面说明理由。  　　第六条 广告发布单位应当使用自有的广播频率、电视频道、报纸、期刊发布广告。  　　第七条 广告发布登记的有效期限，应当与广告发布单位依照本规定第五条第一款第二项规定所提交的批准文件的有效期限一致。  　　第八条 广告发布登记事项发生变化的，广告发布单位应当自该事项发生变化之日起三十日内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变更登记。  　　申请变更广告发布登记应当提交《广告发布变更登记申请表》和与变更事项相关的证明文件。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变更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变更的决定。准予变更的，应当将准予变更决定向社会公布；不予变更的，书面说明理由。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广告发布单位应当及时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注销登记:  　　（一）广告发布登记有效期届满且广告发布单位未申请延续的；  　　（二）广告发布单位法人资格依法终止的；  　　（三）广告发布登记依法被撤销或者被吊销的；  　　（四）广告发布单位由于情况发生变化不具备本规定第四条规定的条件的；  　　（五）广告发布单位停止从事广告发布的；  　　（六）依法应当注销广告发布登记的其他情形。  　　第十条 广告发布登记有效期届满需要延续的，广告发布单位应当于有效期届满三十日前向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延续申请。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在广告发布登记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准予延续的，应当将准予延续的决定向社会公布；不予延续的，书面说明理由；逾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十一条 广告发布单位应当建立、健全广告业务的承接登记、审核、档案管理、统计报表等制度。  　　第十二条 广告发布单位应当按照广告业统计报表制度的要求，按时通过广告业统计系统填报《广告业统计报表》，向工商行政管理部门报送上一年度广告经营情况。  　　第十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依照有关规定对辖区内的广告发布单位采取抽查等形式进行监督管理。抽查内容包括：  　　（一）是否按照广告发布登记事项从事广告发布活动；  　　（二）广告从业人员和广告审查人员情况；  　　（三）广告业务承接登记、审核、档案管理、统计报表等基本管理制度的建立和执行情况；  　　（四）是否按照规定报送《广告业统计报表》；  　　（五）其他需要进行抽查的事项。  　　第十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广告法的规定吊销广告发布单位的广告发布登记的，应当自决定作出之日起十日内抄告为该广告发布单位进行广告发布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  　　第十五条 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未办理广告发布登记，擅自从事广告发布业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广告法第六十条的规定查处。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广告发布登记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予以撤销,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广告发布登记事项发生变化，广告发布单位未按规定办理变更登记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变更；逾期仍未办理变更登记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广告发布单位不按规定报送《广告业统计报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一万元以下罚款。  　　第十六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将准予广告发布登记、变更登记、注销登记等广告发布登记信息通过本部门门户网站或者政府公共服务平台向社会公布。无法通过上述途径公布的，应当通过报纸等大众传播媒介向社会公布。  　　企业的广告发布登记信息和行政处罚信息，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依法向社会公示。  　　第十七条 本办法自2016年12月1日起施行。2004年11月30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公布的《广告经营许可证管理办法》同时废止。 |